

제409회국회  
(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8월25일(금)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
2.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
3.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4.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5.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5)
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9)
9.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 ..... 2
2.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 ..... 2
3.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 2
4.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 2
5.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 2
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5) ..... 2
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9) ..... 2
9.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2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3
  -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시49분 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2일 환경 및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과 8월 24일과 오늘 오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오후 1시 3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개시했습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환노위를 강조해 온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은 하루 460t의 오염수를 17일간 총 7800t 방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총 3만 1200t의 오염수가 방출되는데 이는 현재 원전 설비에 고여 있는 오염수 약 134만t의 2.3% 수준입니다. 모두 방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무려 30~40년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은 있었는지,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인지, 오염될 해양과 피해를 볼 어민들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등 수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정부의 브리핑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양당 간사님들이 이에 대해 조속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산업안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포괄임금제, 실업급여,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

외국 인력 확대, 정년 연장,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소통해야 할 창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 후 대화 창구가 막혀 있습니다.

노동 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회적 대화 없이 노동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나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지난달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이수진 간사님께 환노위 차원의 노사정소위원회 구성 의견을 드렸고 여야 원내대표부에도 이를 제안했습니다.

노사정소위원회는 2014년에 이미 활동한 선례가 있기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소위를 통해 국회가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 좀 더 더 빠르게 노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환노위는 사람을 향해 있기에 서로 간 입장차가 크겠지만 반면에 협의와 합의도 가능합니다.

우리 환노위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 현안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이자 간사님, 이수진 간사님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

2.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

3.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4.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5.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675)

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369)

9.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시53분)

○위원장 박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이상 8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0항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마저 말씀드리고……

각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요?

○이수진(비) 위원 예.

○위원장 박정 2분 안에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수진(비) 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해상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들 또한 지금 걱정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환노위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걸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오후 1시 3분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한 것 관련해서 지난 7월 전체회의 때 여당의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했었던 부분인데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여야를 떠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되지 않았고 객관적

인 시료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대안이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만 생각하고 일본은 해양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더 원망하고 규탄하는 게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괴담이라 치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대처를 말하고 있지만 과학은 증명의 산물 아닙니까? 증명이 없는 과학은 맹신입니다. 과학 없는 맹신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곧 괴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회 환노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야 위원들이 함께 경청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전문가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이자 간사님과 이수진 간사님께서 현안질의 또는 공청회에 대한 것들을 합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수진(비)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이수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상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규정을 분리하는 한편 기상청장이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생산체계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기상청장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극지

분야의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물순환 촉진 구역에서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상하수도 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정비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던 물순환 촉진사업들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물순환 촉진구역과 도시하천구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른 특정 도시하천구역이 중복 지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도시하천구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보완하여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등으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5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이수진 의원,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

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그 목적을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되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재조치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형벌의 비례성 및 다른 노동관계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벌칙 수준을 하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에게 결혼중개업, 숙박업 등의 겸업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개정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겸업 금지 대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에게도 겸업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성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성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진성준입니다.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과 오늘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38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는 집행 부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는 부적절한 수당 지급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토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대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감독하고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서 작성 대행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충전소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야생동물 사육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와 동물복지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후대응기금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이 어제 의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실집행 제고 방안 마련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5건, 주의 25건, 제도개선 42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적과 효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지원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집행 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지원 대상을 설정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업무상재해 조서관정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증액, 재해 조사인력 확보 및 역학조사 기간 지연 최소화 등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재사건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 저조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7건, 제도개선 11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위험기상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운행 관련 정보도 함께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료 측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연구원 비율을 높이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수행체계를 마련하도록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법안과 결산 등을 심사해 주신 각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노동법안소위에서 10개월에 걸쳐 전환법에 대한 지난한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저는 이 법이 탄소중립기본법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에 대해 규정하는 첫 번째 법안이라는 점에서 또 향후 산업전환·노동전환과 관련된 여타 법들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의 과정에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보상과 지원,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돼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대원칙으로 삼고 법안심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의 과정은 실망의 과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사 과정에서 보인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목적에 정의로운 전환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에 노동부는 번번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의로운’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정의로운’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제명과 목적에 반영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정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을 정부가 애써 외면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고 귀찮은 절차 하나 보태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오만함과 안일함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핵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핵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논의하게 될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에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게 아니냐고 합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부터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계획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100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놓은들 시행령에 근거한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예, 1분 더 드리세요.

○이은주 위원 유감스럽게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식물기구라는 세간의 평을 듣고 있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일곱 번째 전문위원회가 또 하나 만들어질 것이라는 노동계 당사자들의 분노와 우려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부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개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5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2조부터 제26조 및 부칙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3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26조부터 제34조 및 부칙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6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14조부터 제17조 및 부칙까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아니지만 약간 의견 잠깐……

○위원장 박정 의사진행발언요?

○이수진(비)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정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도 아쉬운, 법안이 매우 필요하고 급격한 산업전환에 대한 노동전환, 정의로운 노동전환이 분명하게 정부의 책임에 그리고 노동자들 또 이게 노동자뿐만 아니지요. 노사가 대등하게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지역까지 잘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데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 10개월간 법안을 만들고 노동계와 그리고 또 중소기업 사장들, 지역의 중소 또 자영업자분들까지 많은 분들을 수차례 만나면서 이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은 정말 가슴을 누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법률안에 담지 못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노동부장관도 와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의 필요성 때문에 법률에 분명히 담겨야 되는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부대의견 정도로 담았지만 이게 공포 후 6개월 안에 분명하게 시행령으로 노사가 대등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한두 명이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대표성을 띠는 조직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구축되도록 제대로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해 주셔야 그래야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이 자리에 저희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게 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 임이자 간사님 말씀 듣고 다시 고용노동부장관 말씀하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님들의 많은 고뇌에 찬 결단에 의해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문위원회 설치 관련돼 가지고 노사 동수에 대해서는 참 서로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 부대의견으로 담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이따 장관께서 이와 관련돼서 말씀하실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 법안 통과에 따른 말씀하실 때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장관님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아까 존경하는 환노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내용 있게 추진돼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나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로운 전환이 되고 그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이 충분히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있는 대로 6개월 이내에 제대로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이 전체를 그냥 다……

○위원장 박정 아닙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지난 8월 22일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체회의에서의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6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은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 표결 의견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6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반대하시는 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정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은주 위원님 한 분 계시네요.

기록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가 어제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는 예결위에 송부하여 종합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요구 사항과 부대의견 및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의 자구 수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 및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과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진성준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탄소중립, 홍수 대응 등의 환경정책에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제때 제대로 집행해 줄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가슴에 새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물 문제에 대한 시책을 물순환 전 주기를 고려해 통합 연계할 수 있게 하여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존경하는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주신 임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진성준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일부 상향하는 것이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간 직업소개사업자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겸업금지 조항을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중한 국가재정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심의 및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존경하는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2022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이수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이 기본법인 기상법에 산재되어 있는 기후·기후변화 업무 내용만으로는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및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제정법률안 의결로 인하여 기상청은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기후위기 관련 정책 지원 등의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수해, 폭염, 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하여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예측 정보를 보다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전 대응체계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상청의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총괄 지원 기능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종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법률이 적기에 시행되고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하시고 대표발의해 주신 임이자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에 있어서는 심의 과정에 쏠려 주신 다양한 분야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보다 나은 예산 수반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님,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이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지금 일정은 다 마쳤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음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현안질의 또는 공청회 또는 두 개를 같이하는 방안을 양당 간사의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최근에 회의하는 걸 보니까 환경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030년까지 누적 8조 80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규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그중에 화평법·화관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화평법·화관법을 왜 만들었는지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가슴기살균제로 몇 사람 죽었는지 아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말씀하시지요.

○우원식 위원 아시냐고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정확하게 인원 수는 기억을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 숫자로 결국은, 본인이 입증해 내지 못해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잘 몰라요. 신고한 사람 중에서는 천몇백 명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호흡기 질환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때하고 비교하면 한 2만 명 정도 많아요. 추정하면, 그게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기간에 비해서 2만 명 많아진 것이 가슴기살균제랑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진통을 겪고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가슴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진, 그 눈물 속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것도 기업들 때문에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0.1t으로 그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의 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규제한다고 하는 게, 환경부장관 맞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우원식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0.1t으로 된 이유에 대한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규제 혁신 화평법·화관법 이 부분은……

○우원식 위원 EU 기준에 맞춰 보겠다고 하는데 EU에는요, CMIT/MIT, PHMG 이런 물질을 가지고 가슴기살균제를 만들지 않아요. 거기에

는 훨씬 더 탄탄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MSDS, 물질에 관련된 조사가 훨씬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구멍이 뽕뽕 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돼 있지 않고 이걸 열면 환경부장관은 나중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환경부장관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가슴기살균제로 우리가 얼마나 큰 진통을 겪었는데, 제가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거 법 통과 못 될 거예요. 제가 있는 한, 제가 눈 뜨고 있는 한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죽은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영국 런던 가서 레킷벤커 사장한테까지 제가 2시간 동안 설명하고 사과 받았어요. 우리 정부, 도와준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산업부장관처럼 하면 안 돼요. 규제에 있어서, 공유지의 비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지막 보루는 환경부장관입니다. 그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산업부장관처럼 행세하지 마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쉽게 생각한……

○**우원식 위원** 뭐라고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제가 산업부장관이 아니고 환경부장관입니다. 화평법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요.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우원식 위원** 우려하는 사항을 잘 알면 법 개정할 생각 하지 마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지금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수없이 논의를 했습니다.

○**우원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말씀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제가 분명하게 경고 말씀 드린 거고요.

방류하는 것 보니까 1t에다가 1200t의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희석시키더라고요. 삼중수소가 오염수 안에 몇 Bq입니까, 지금 들어있는 게? 희석시키기 전에.

○**환경부장관 한화진** 희석시키기 전에 지금 방류 기준은 일본은 한 6만으로, 4만, 5만~6만……

○**우원식 위원** 아니, 오염수에 삼중수소가 얼마

나 들어 있냐 이거예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60만Bq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희석시키는 거 괜찮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괜찮습니다.

○**우원식 위원** 우리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 괜찮다고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희석해서 방출하는 것은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우원식 위원** 우리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8조(행위제한) ‘허용농도,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괜찮아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몰라요,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우원식 위원** 이것 알아요, 몰라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지금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원전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액체상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나라 물환경보전법 38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이지 방류수의 기준만 갖고 보는 건 아니에요, 총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희석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나라 물환경보전법 38조에도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 원칙적으로 물로 희석해서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요. 그렇게 희석해서 배출할 경우 그래서 방류기준에 맞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희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가. 총량 규제로 오면서 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지금 원전수는 폐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원전수는 말씀드린 대로 액체상 방사성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액체상의……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방사능폐기물.

○**환경부장관 한화진**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량의 물로 희석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서 배출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안전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방사성 관련해서는.

○**우원식 위원**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이걸 그러면 뭐예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원자력안전법상에 액체상 방사성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우리 법의 기본이 희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량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조항을 가지고 ‘이것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 아니요, 이걸 물환경보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이걸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고요. 원자력안전법에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물환경보전법도 얘기하고 방사성폐기물 분류에 관한 규정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체계 전반이 희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폐기물 처리할 때 우리 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잘 확인하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 ○출석 위원(12인)

|     |        |     |     |
|-----|--------|-----|-----|
| 김영진 | 노웅래    | 박대수 | 박정  |
| 우원식 | 이수진(비) | 이은주 | 이학영 |
| 임이자 | 전용기    | 지성호 | 진성준 |

#### ○청가 위원(1인)

이주환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오창석 |
| 전문위원   | 임재금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            |     |
|------------|-----|
| 장관         | 한화진 |
| 차관         | 임상준 |
| 자연보전국장     | 김종률 |
| 자원순환국장     | 김승희 |
| 감사담당관      | 진명호 |
|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 김구범 |
| 정책기획관      | 이창흠 |
| 기후변화정책관    | 안세창 |
| 녹색전환정책관    | 장기복 |
| 대기환경정책관    | 박연재 |
| 물통합정책관     | 박재현 |
| 물환경정책관     | 류연기 |
| 수자원정책관     | 손옥주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김동진 |

고용노동부

|           |     |
|-----------|-----|
| 장관        | 이정식 |
| 차관        | 이성희 |
| 기획조정실장    | 최현석 |
| 고용정책실장    | 김성호 |
| 노동정책실장    | 이정환 |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류경희 |
| 통합고용정책국장  | 하형소 |
| 직업능력정책국장  | 권태성 |
| 감사관       | 김영현 |
| 정책기획관     | 이용욱 |
| 국제협력관     | 김은철 |
| 노동시장정책관   | 정경훈 |
| 고용서비스정책관  | 이민재 |
| 고용지원정책관   | 임영미 |
| 노동개혁정책관   | 권창준 |
| 노사협력정책관   | 이창길 |
| 근로기준정책관   | 김유진 |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 김철희 |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최태호 |
| 청년고용정책관   | 이현욱 |

기상청

|           |     |
|-----------|-----|
| 청장        | 유희동 |
| 차장        | 장동언 |
| 기획조정관     | 유상진 |
| 예보국장      | 정관영 |
| 관측기반국장    | 연혁진 |
| 기후과학국장    | 이미선 |
| 기상서비스진흥국장 | 이정환 |
| 지진화산국장    | 정현숙 |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8. 16. 임이자·김형동·지성호·정희용·이종성·이용·백종현·박대수·구자근·김영식 의원 발의)

8월 17일 회부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8. 18. 임이자·김형동·지성호·정희용·이종성·이용·백종현·박대수·구자근·김영식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3. 8. 18. 이상헌·전재수·양경숙·조정훈·유정주·신정훈·김수홍·서영교·김승남·박완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1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김정호·박상혁·어기구·서동용·김윤덕·임종성·윤후덕·정춘숙·허종식·정성호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안병길·이현승·조명희·류성걸·이주환·권명호·조은희·전봉민·정동만·성일중·이달곤·구자근·김학용·김태호·박대수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임이자·이인선·박대수·서범수·정우택·최영희·조수진·권명호·박진·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22일 회부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8. 22. 이소영·김원이·오영환·장경태·이용우·송갑석·윤건영·전용기·김영배·강훈식·정태호·허영·강민정 의원 발의)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2. 김영진·허영·최종윤·임호선·유정주·윤후덕·유기홍·이학영·이정문·노웅래 의원 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2. 김영진·허영·최종윤·임호선·유정주·윤후덕·유기홍·이학영·이정문·노웅래 의원 발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2. 김영진·허영·최종윤·임호선·유정주·윤후덕·유기홍·이학영·이정문·노웅래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2. 김영진·허영·최종윤·임호선·유정주·윤후덕·유기홍·이학영·이정문·노웅래 의원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2. 김영진·허영·최종윤·임호선·유정주·윤후덕·유기홍·이학영·이정문·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6건 8월 23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3. 8. 17. 홍성국·최혜영·이개호·이용선·이병훈·김두관·양기대·홍기원·정태호·김한규·강준현·김원이·박상혁 의원 발의)

8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3. 8. 22. 윤재옥·양금희·김형동·홍석준·이인선·김용관·김상훈·정희용·박형수·김석기·임병헌·金炳旭·김정재·임이자·주호영·윤두현·송갑석·양향자·이병훈·김승수·김희국·이용빈·민병덕·김태호·이양수·조명희·백종현·김영식·강대식·민형배·이용호·지성호·장동혁·전주혜·엄태영·윤영덕·구자근·이형석·권은희·이만희·서일준·이개호·윤재갑·신정훈·전봉민·박정하·조수진·최승재·한무경·조은희·김예지·태영호·이종성·배준영·정경희·이주환·박대출·류성걸·송언석·서정숙·김성원·김희곤·박성민·유의동·김영선·강기윤·노용호·김원이·권명호·

조오섭 · 강민국 · 서범수 · 문진석 · 한정애 · 김승남 · 배현진 · 최종윤 · 신원식 · 서영석 · 최춘식 · 전재수 · 허종식 · 홍정민 · 정운천 · 안병길 · 하영제 · 이재정 · 박성준 · 주철현 · 허영 · 인재근 · 최연숙 · 박덕흠 · 허은아 · 최형두 · 강은미 · 윤영석 · 김정만 · 윤주경 · 이원욱 · 박홍근 · 김정호 · 이종배 · 윤창현 · 김성주 · 김홍걸 · 조해진 · 정동만 · 안호영 · 전해철 · 유상범 · 이원택 · 서동용 · 최영희 · 윤준병 · 우상호 · 한병도 · 신영대 · 양경숙 · 조경태 · 박성중 · 유정주 · 안철수 · 정우택 · 박대수 · 소병훈 · 홍문표 · 유경준 · 남인순 · 김미애 · 송석준 · 이달곤 · 권성동 · 오영환 · 안규백 · 소병철 · 서영교 · 이용 · 김병욱 · 유동수 · 최재형 · 서병수 · 임호선 · 이동주 · 윤호중 · 한기호 · 박정 · 민홍철 · 임종성 · 양기대 · 김한규 · 정춘숙 · 최강욱 · 김한정 · 박용진 · 정태호 · 김두관 · 한준호 · 김영호 · 김종민 · 성일종 · 이상헌 · 박수영 · 진선미 · 이현승 · 정점식 · 이채익 · 홍익표 · 강준현 · 김학용 · 윤상현 · 장제원 · 김도읍 · 홍성국 · 하태경 · 김의겸 · 김영주 · 박찬대 · 이정문 · 이학영 · 김상희 · 이철규 · 이용우 · 도종환 · 진성준 · 강선우 · 김주영 · 윤영찬 · 김태년 · 정성호 · 우원식 · 이수진 · 권칠승 · 양이원영 · 김기현 · 이상민 · 정진석 · 황희 · 박주민 · 최기상 · 최인호 · 정필모 · 유기홍 · 김민석 · 최혜영 · 이명수 · 맹성규 · 김웅 · 윤한홍 · 김민철 · 이태규 · 홍영표 · 이소영 · 박광온 · 송기현 · 오기형 · 이장섭 · 임오경 · 김성환 · 장경태 · 김수홍 · 송재호 · 위성곤 · 김승원 · 이인영 · 어기구 · 이재명 · 고영인 · 이용선 · 전용기 · 정일영 · 김민기 · 장철민 · 문정복 · 이해식 · 전해숙 · 박범계 · 강병원 · 박재호 · 김용민 · 강훈식 · 권인숙 · 정청래 · 신현영 · 황운하 · 강득구 · 김경협 · 박상혁 · 이수진(비) · 설훈 · 백혜련 · 윤후덕 · 고용진 · 홍기원 · 이탄희 · 김영배 · 권영세 · 변재일 · 서삼석 · 황보승희 · 김병기 의원 발의)

8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 구분    | 대통령령 | 부령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
| 환경 소관 | -    | 2  | 2  | -  | 3  | -  |

| 구분      | 대통령령 | 부령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
| 고용노동 소관 | -    | -  | -  | 1  | -  | 1  |

| 구분 | 공포번호   | 행정입법                                    | 소관<br>부처 | 공포<br>일자        |
|----|--------|-----------------------------------------|----------|-----------------|
| 부령 | 제1049호 | 환경오염시설의<br>통합관리에 관한<br>법률 시행규칙<br>일부개정령 | 환경부      | 2023.<br>8. 16. |
| 부령 | 제1050호 | 대기환경보전법<br>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환경부      | 2023.<br>8. 16. |

#### ○통지

##### 국회의원 궐원 통지

| 의원명 | 정당명  | 선거구         | 사유           | 연월일             |
|-----|------|-------------|--------------|-----------------|
| 정찬민 | 국민의힘 | 경기도<br>용인시갑 | 퇴직<br>(당선무효) | 2023.<br>8. 22. |